

# 공연시설에서의 장애인 객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facility standards of Accessible seating in Theater&Culture Architecture

김영은\* / Kim, Young-Eun  
이건하\*\* / Lee, Keon-Ha

## Abstract

Due to the recent Law on facilities Improvement in public performance facilities, equal access to the need of cultural satisfaction and the standards of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to be assess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ow to improve the facilities for disabled individuals and provide complementary guidelines for amenities designe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ability codes in Korea, Japan, USA, Australia and Canada as well as a field observation.

Th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improved guidelines in terms of accessibility and accessible seating, whi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acility standards need to be complemented and clarified in terms of a detailed description, (2) regarding facilities for accessible seating, fall prevention handrails should be lowered to a height within the range of vision of the individual (3) The purpose and user's manual for theater and cultural facilities as well as detailed dimensional requirements need to be restated, and (4) an improvement in accessible seating in theaters and cultural facilities is needed.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is to show an arrangement of a fundamental judgement and a ground data which can be complemented in planning a public performance facilitie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키워드 :** 공연시설, 장애인, 객석, 장애인객석, 시설기준

**Keywords :** Theater facility, Person with disabilities, Auditorium, Accessible seating, Facility standards

## 1. 서론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도 제정된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문화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전문가의 미비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편의시설 설치사례가 많았으며, 실제 문화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과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 중 공연시설까지의 접근성, 이동성을 중심으로 법적 최소 규정에만 만족하는 설치와 설치율에 만족하여, 실제 공연시설에 있어서 공연관람을 위한 장애인객석이 이용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공연관람에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의 문화욕구와 문화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공연관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외출에 있어서 월평균 외출회수가 5회이하인 장애인이 67.7%이며, 연극 및 영화와 같은 공연 관람은 1년에 1~2회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외출을 거의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외출만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편의시설의 개선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지금까지 공연시설에서의 장애인 관람 및 객석의 위치는 대부분 객석 뒤쪽이나 난간 뒷부분이었다. 이유는 집밖에서 일반적인 활동도 하기 불편한 장애인이 공연시설을 이용하는 빈도 수가 낮았기 때문이며, 공연시설의 건축 계획에서 장애인 관람

\* 정희원, 한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한서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1)사단법인 장애우 권리문제 연구소가 2000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에 관한 참여실태와 전반적인 장애인 문화복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객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지 및 인식 부족이 놓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객석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장애인의 공연 관람에 대한 평등권을 해칠 수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교육활동, 직업 활동 등 사회참여활동 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종교 등의 욕구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에게 최적의 객석 위치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지어진 공연시설의 경우 장애인 객석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는 데에 공연 문화시설의 평면적, 단면적 특성을 고려한 상세기준이 제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개선 방안은 앞으로 계획될 공연 문화시설에서 초기계획에서 이동의 편의성이 고려된 장애인 객석을 배려한 객석배치유형을 제안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연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객석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편의증진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연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객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과 부적합의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객석 배치유형을 분석하여 공연관람에 있어서 관련 설치기준의 실효성과 장애인 객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조사대상의 범위는 문화관광부 소관 국립 문화 예술 시설과 소속단체의 문화 예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문화 예술 관련 시설은 다음의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문화예술 시설을 개관한 다음에 시설의 종류, 운영주체, 운영내용, 시설의 여건, 소재 지역(대도시권, 중소도시권, 농·어촌권) 등이 고려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제정 이후 개관 및 증개축이 된 문화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공연 시설은 공연장의 전용 기능을 가지는 시설과 복합기능(공연, 음악회, 연극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는 공연관람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객석의 편의 시설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 2. 공연시설의 객석

### 2.1. 공연시설의 객석 유형

장애인의 공연시설 이용에 있어서 관람으로 목적으로 할 경우 장애인 객석에 대한 편의시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연시설의 객석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객석의 형태

는 일반적으로 의자의 배열과 객석이 띠는 모양에 따라 말굽형, 슈박스형, 부채형, 확성기형, 킹크랩형, 바인야드형으로 구분한다.<sup>2)</sup>

<표 1> 공연시설의 객석 유형

객 석 유 형	말굽형	슈박스형	부채형	확성기형	킹크랩형
					

확성기형(Megaphone type)은 우리나라의 공연 문화시설에서 선호도가 두드러지는데, 1970년대의 대소 공연장 대다수가 그리고 1980년대에 와서도 주요 대 공연장들이 이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sup>3)</sup> 상자형(shoebox type) 형태는 구민회관 같은 중 공연장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는 평면구성이 간단하며 공사비가 절감되는 한편 다목적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연시설의 객석 배치형태는 대부분 무대를 중심으로 1면 인접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관객의 수요특성상 다목적 홀이라는 공연장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 공연시설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sup>4)</sup>. 그러나 1990년대에 와서 무대를 중심으로 가변성 객석을 도입함으로써 무대에 대한 객석의 배치 형태를 3면, 4면 인접형으로 시도 하고 있다.

### 2.2. 장애인객석의 국내법적기준분석

#### (1)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문화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7382호) 제7조 대상시설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며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에 의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문화 및 접회시설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분류된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에 의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문화시설은 문화 및 접회시설로 분류되며 본 연구와 관련되는 시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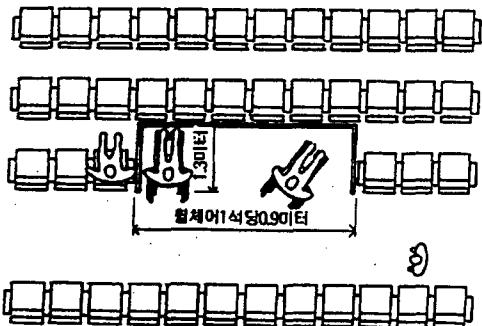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 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규정에 의해 문화시설에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의 매개시설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건축자료연구회 역, 극장·홀(건축설계자료실례집 38), 보원, 서울, 1991, p 28

3)이태은 외 1인, 한국 현대공연장건축의 무대와 객석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0.3, p 24

4)이태은 외 1인, 앞책,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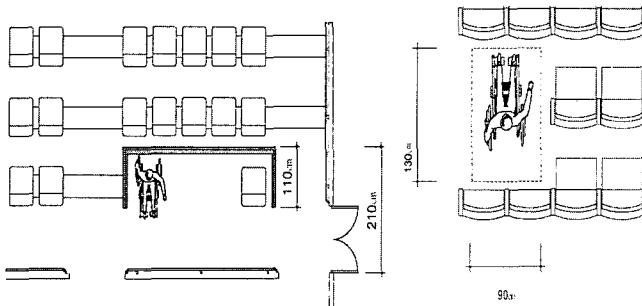


<그림 1> 편의증진법의 관람석의 구조

또한 내부시설인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가 의무사항이며 위생시설 중에서는 대변기만 의무사항이며 소변기 세면대 등은 권장사항이다. 그 외 기타시설에 포함되는 관람석 및 열람석은 의무사항이다.

#### (2)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sup>5)</sup>에서 객석의 수는 관람석 전체의 1%이상은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으로 확보해야 한다. 산정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1석으로 합산한다. 전체의 좌석수가 2000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으로 한다. 객석의 구조는 1석당 폭 90cm이상, 깊이 13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와 보조인 또는 동행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통로에 근접한 좌석을 휠체어용으로 하면 유리하다.



<그림 2> 서울시 편의시설 매뉴얼 : 휠체어 객석의 구조 및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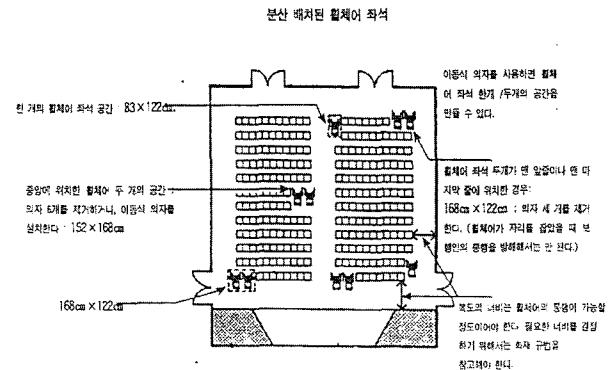
### 2.3. 장애인객석의 국외법적기준분석

#### (1) 미국

UFAS<sup>6)</sup>에서는 공간에 대한 접근 방법에 기준한 휠체어 좌석 공간의 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휠체어 좌석 공간에 대해 앞 또는 뒤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 이 공간은 최소 가로 122cm, 세로 168cm가 되어야 한다. 만약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라면, 최소 가로 152cm, 세로 168cm의 공간이 필요하다.

몇몇 주에서는 이동 장애가 있으나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좌석 통로 중 일정 비율은 앞뒤 의자 사이의 간격이 46~6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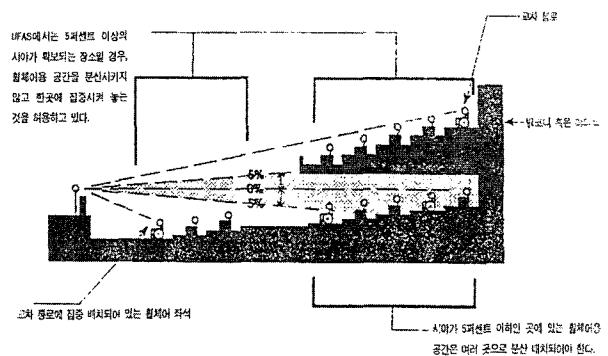
의 공간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목발이나 부목을 착용한 사람에게는 발을 뻗을 공간이 필요하다.



<그림 3> 분산 배치된 휠체어 좌석 (미국 UFAS)

휠체어 좌석 공간은 반드시 분산 배치되어야 하는데 고정 좌석으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다수의 청중들을 위해 마련된 좌석들과 동급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해진 장소 외부에 설치된 개인 공간 또는 군집된 공간은 적합한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휠체어 좌석 공간은 접근 가능한 통로 상에 위치하여 비상시에는 탈출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휠체어 좌석 공간은 다른 모든 장소에서 확보되는 시야와 비슷한 시야가 확보되어야 한다. 좌석의 분산 배치 요구 조건에 대한 2가지 예외적 경우로는 야외석 또는 박코니와 같은 관람장소의 시야가 5%이상일 경우 및 좌석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기존 시설물이 있다.



<그림 4> 휠체어 좌석의 시야 확보 (미국 UF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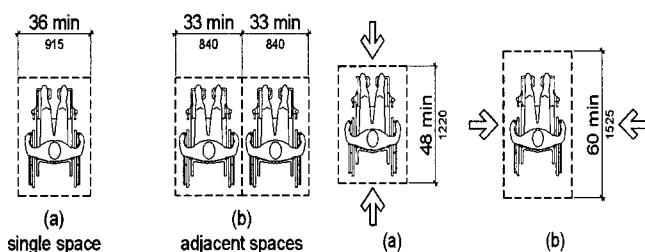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sup>7)</sup>에 따르면 휠체어 객석 공간의 적절한 수를 제공하고 팔걸이가 없는 통로 측 좌석

5)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1999, pp.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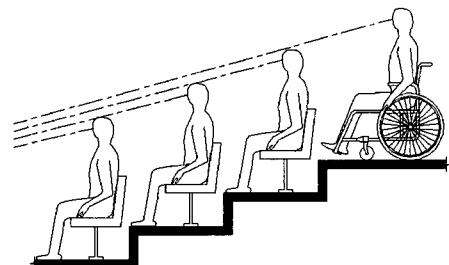
6)Technical paper on accessibility codes and standards, U.S. Access Board, 1994, (<http://www.access-board.gov/ufas/ufas-html/ufas.htm>)

7)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Sec.36.308 Seating in assembly areas. 1994, p.56

을 제공하며, 휠체어를 탄 채로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동행자와 앉을 수 있도록 개별 좌석이 제거 가능하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동행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개인과 앉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휴대용 의자 또는 다른 수단을 제공한다. 일반관객과 비교하여 동일한 가시거리를 제공한다. 피난을 대비하여 접근 가능한 통로에 접하도록 한다.



<그림 5> ADA 휠체어 좌석 공간 치수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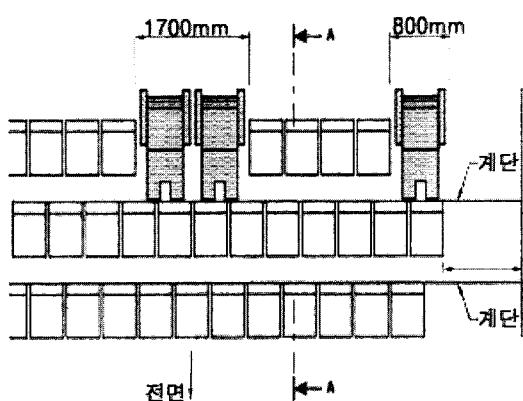
<그림 6> ADA 공연장 휠체어객석에서 대등한 가시거리

## (2) 호주 AS1428.2

호주에서는 호주표준(AS : Australia Standards) 규정에 의해 모든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8)</sup>

AS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편의시설 외에 특수형태의 건물에 대한 부분은 AS1428.2의 부록 B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집회장소(강당, 극장, 영화관, 운동장, 교회, 법정, 회의실)에서 휠체어 좌석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휠체어의 최소공간은 다음 그림에 따른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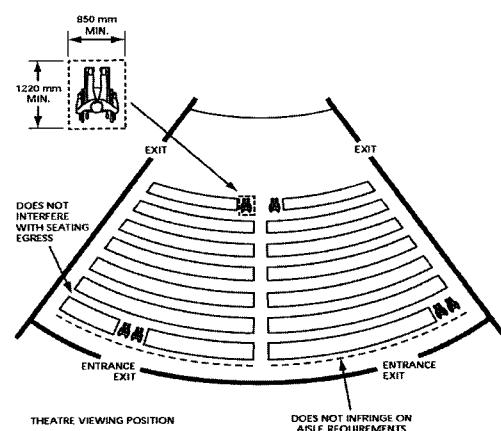


<그림 7> 집회장에서의 휠체어 좌석 (호주)

## (3) 캐나다 CANADA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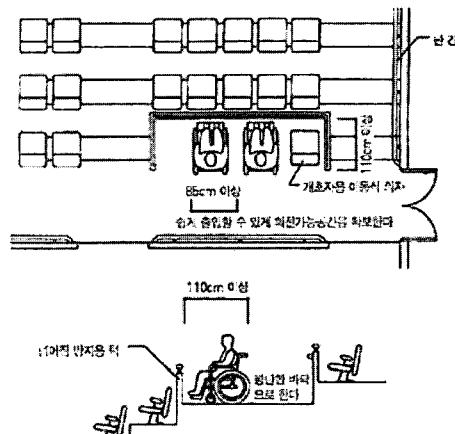
캐나다에서는 2.5.15 Meeting Rooms, Assembly Areas and Theaters에서 장애인 객석의 분산 배치를 규정하며, 좌석에 대한 설비 기준은 Section 1.3.7, Grandstands and Viewing Areas에서의 좌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실 등의 장소에 접근 가능한 좌석을 제공하며 모든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이동장애가 있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한다.<sup>9)</sup> 접근 가능한 좌석의 수는 100개의 좌석 중 1개의 좌석을 제공한다.



<그림 8> 장애인 객석 정비기준 (캐나다)

## (4) 일본



<그림 9> 일본 장애인 관람석 · 객석의 기본 치수

일본 장애인 건축물 관람석 · 객석 정비기준<sup>10)</sup>에서 객석기준을 살펴보면, 휠체어 관람석에 대한 좌석 기준을 관람석과 객석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8)The Australian Standard AS1428.2, Part 2 Design for access and mobility, Buildings and facilities, Standards Association of Australia, Australia, 2001. p.36

9)CANADA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 2.5.1 Arenas / 2.5.15 회의실, 집회실 및 극장/ 2.5.24 Theatres and Media Display Areas, 2004, p.97

10)일본 장애인 건축물 관람석 · 객석 정비기준, 후쿠오카시, 1999, p.83

<표 2> 장애인객석의 설치 기준 종합 분석

국가별 설치기준	휠체어 좌석공간	시야 확보	통로	동행석	배치	안전장치	객석과 관람석 기준의 분리
편의증진법	1석당 폭 0.9m, 깊이 1.3m 이상						관람석으로 통합규정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기준	1석당 폭 90cm 이상, 깊이 130cm 이상		통로의 유효폭은 120cm 이상 회전 또는 교행 시 150cm 이상	휠체어 사용자와 보조인 또는 동행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통로에 근접한 좌석을 휠체어용	목발이용자는 발을 굽힐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통로에 면한 좌석이 좋고 통로쪽 팔걸이는 상하 기변식으로 하면 좋다.	추락방지 : 난간높이 110cm	객석으로 통합 기준은 관람석에 해당
미국 UFAS	최소 가로 122cm, 세로 168cm	휠체어 좌석 공간은 다른 모든 장소에서 확보되는 시야와 비슷한 시야가 확보	휠체어 좌석 공간은 접근 가능한 통로 상에 위치하여 비상시에는 탈출 수단의 역할		좌석의 분산 배치 예외적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기준 시설물		휠체어 좌석공간으로 규정
미국 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일반관객과 비교하여 동일한 가시거리를 제공.	피난을 대비하여 접근 가능한 통로에 인접.	휠체어를 탄 채로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동행자와 앉을 수 있도록 개별 좌석이 제거 가능	휠체어 객석공간의 적절한 수를 제공하고 팔걸이가 없는 통로 측 좌석을 제공	미끄럼 없는 바닥재질	휠체어 객석공간으로 규정
일본 장애인 건축물 관람석·객석 정비기준 해설	휠체어대용 관람석은 1석당 폭 85cm, 깊이 110cm로 한다.	홀 내에 복수의 휠체어대용 관람석을 설치하고, 보는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휠체어대용 관람석으로 이르는 통로의 폭은 출입과 회전이 쉽게 이루어도록 배려한다.	개호자용 좌석도 휠체어대용 관람석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휠체어 대용 관람석의 바닥은 수평으로 한다.	관람석으로 규정
AS : Australia Standards		휠체어 자리는 보통 보이는 선대로 시선을 방해하지 않게 둔다.	휠체어가 차지하는 전 면적은 복도 넓이를 25cm 이상, 교차지역을 30cm 이상		휠체어 자리는 고정좌석 옆에다가 전 강당 내에 날개 또는 쌍으로 분포	휠체어가 놓인 바닥표면 경사도는 1:40	휠체어 객석으로 기준 분리
CANADA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	스쿠터휠체어의 크기 증가로 폭은 최소 90cm 깊이는 150cm	접근 가능한 좌석 위치에는 명확한 시야확보가 있어야 한다.	정면 또는 후면 입장을 위해 1200mm 통로 폭을 확보			편평하며 미끄럼지 않은 재질로 바닥마감	접근 가능한 좌석으로 규정/객석기준 분리

## 2.4. 장애인객석의 설치 기준 종합 분석

이상에서와 같이 각국의 장애인 객석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에 장애인 객석에 요구되는 기본적 설치 기준 항목을 다음과 <표 2>와 같이 추출하여 종합 비교를 해 보았다.

현재의 국내 편의 증진법 및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서의 장애인 객석에 대한 기준은 해외 법적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관람석·객석 정비기준을 부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연시설에 있어서 가시거리 확보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미국 UFAS 기준에서 제안되고 있는 시야 확보를 위한 관련 조항이 국내 기준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국내 편의시설 설치 기준 <그림 1>과 <그림 2>에서 살펴보면 공연시설의 객석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추락 방지 난간은 공연장 내 객석디자인과 맞지 않으며, 안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난간높이는 공연문화 시설에서 중요한 가시거리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호주의 객석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난간의 설치적용은 운동장, 스타디움과 같은 관람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객석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서울시 설치 매뉴얼에서는 난간의 높이 제한을 110cm 이하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추락 방지 난간의 설치 및 높이 제한은 해외 법적 기준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락 난간의 설치는 공연시설에서 장애인 객석의 위치를 객석 배열의 맨 뒤로 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 3. 공연시설의 장애인객석 분석

### 3.1. 실태조사

장애인객석의 배치 형태는 이동 편의성과 관계하여 객석 배열과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연시설의 객석 배열은 직선세로 통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1)</sup>. 이는 직선세로 통로의 형태가 확성기형(메가폰형)과 상자(슈박스)형의 객석의 좌석 배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공연 종류에 적합한 전문 공연장, 콘서트홀

11) 공연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공연장의 관람석에서 열과 열 사이에 가로 열에 따라 각각 세로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세로통로의 형태는 직선세로통로와 방사세로통로로 분류되는데 이태은의 논문에서 직선세로통로가 67%, 방사세로통로가 33%로 조사되었다.

및 오페라에 맞는 다양한 객석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면유형의 다변화와 가변성에 장애인 관객의 인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객석의 배치 및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조사대상 공연시설의 평면객석형태에서도 대부분 확성기형(메가폰형)과 슈박스형으로 조사되었다<표 3>.

<표 3> 조사대상 공연시설의 평면객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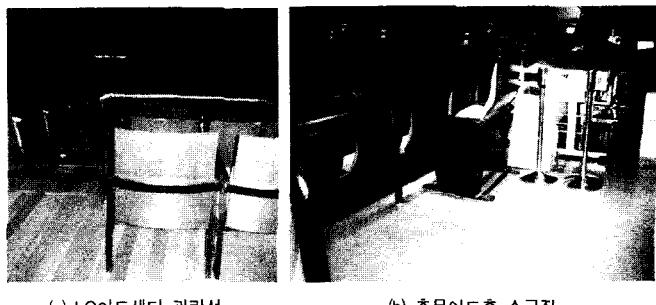
공연시설	평면객석형태(개)
국립국악원-예악당/국립국악원-우연당/국립남원민속국악원/LG아트센터/천안시민회관/광진문화예술회관 정동극장/금산다락원/노원문화예술회관 북구문화예술회관/순천문화예술회관	상자(슈박스)형(11)
과천시민회관/의정부예술의전당/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세종문화회관-대극장/대구시문화예술회관/국립중앙극장-해오름극장/고양문화재단/부산문화회관(대극장)/호암아트홀/광주문화예술회관	확성기(메가폰)형(10)
안산문화예술의전당/아르코예술극장 수원아와음악당/충무아트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부체형(5)
예술의전당-음악당/오페라극장	킹크랩형(2)
국립남도국악원/대구오페라하우스	말굽형(2)

실태조사는 장애인 객석의 설치 유무와 설치기준을 현행기준에 따라 항목을 설정하여 객석의 배치위치 및 유형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공연시설의 장애인 객석 설치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객석의 설치 기준인 좌석 공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규격설치 기준의 만족여부에 대하여 항목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좌석 배치에 대하여는 배치기준이 따로 제한되고 있지 않기에 배치 위치에 대한 현황 조사만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설치위치가 한 곳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거나 맨 뒷자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비장애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설도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참조>.

### 3.2. 공연시설의 장애인 객석 배치

대부분의 시설이 한곳에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2개 시설에서 열에 따라 좌우 배치하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동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비장애인 동행인 및 휠체어 비사용자와 동석할 수 있도록 휠체어 장애인 객석을 같이 배치하고 있는 경우도 맨 뒷자리에 배치하고 있었으며 좌석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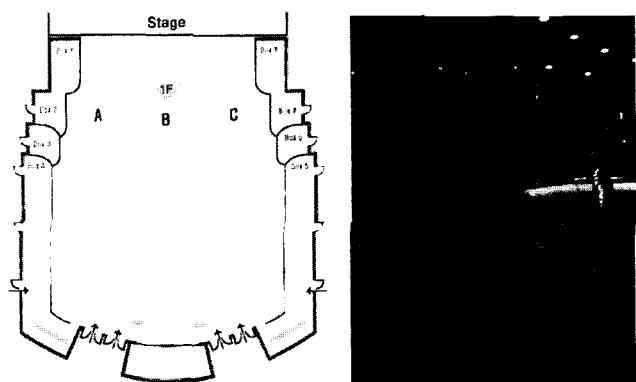
이 경우도 공연 무대와 객석까지의 가시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질적인 공연 관람에 어려움이 나타났다.



(a) LG아트센터-관람석 (b) 충무아트홀-소극장

<그림 10> 휠체어 비사용자와 동석하는 동행인 좌석 유형

장애인 객석의 배치 유형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맨 뒷줄 혹은 맨 앞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이 시야 확보는 가능하나 공연 관람에는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1개 시설에서는 앞좌석이 높아 시야확보조차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연시설의 객석 평면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편의시설설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11 참조>.



(a) 예술의 전당-오페라극장 좌석배치도

(b) 예술의 전당-오페라극장

<그림 11> 장애인 객석의 맨 뒷줄 배치 유형

제일 앞줄의 배치의 경우 출입구의 위치와 관련이 있었다. 맨 뒷줄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장애인 객석을 설치하지 못하기에 출입이 용이한 맨 앞줄에 장애인 객석을 설치해야 하나 기존에 설치된 객석 배열을 개선하지 않고 제일 앞 줄에서 관람하도록 좌석을 배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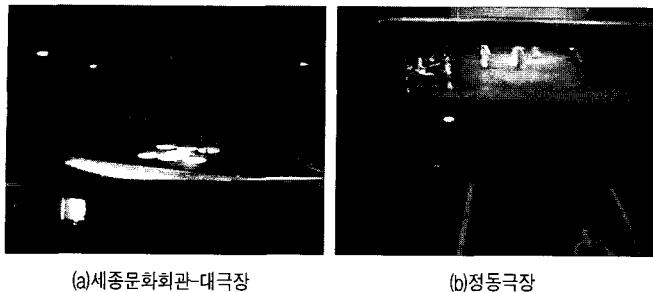
(a) 국립남도국악원-대공연장

(b) 국립남원국악원

<그림 13> 장애인 객석의 앞줄 배치 유형

### 3.3. 공연시설의 장애인 객석의 시야 확보

장애인 객석 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공연시설에서 장애인 객석의 시야 확보를 막고 있으며, 공연관람에 대한 차별성을 느끼는 편의시설 중 하나가 보호 난간(추락방지 난간)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3> 공연 무대와 장애인객석에서의 시야차단

보호난간의 잘못된 설치로 인해 실제 공연 관람이 불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도하게 높은 난간 높이 및 굽기로 인해 보호 난간이 아닌 격리 난간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보였다 <그림 14 참조>.



<그림 14> 장애인 객석의 보호 난간의 잘못된 설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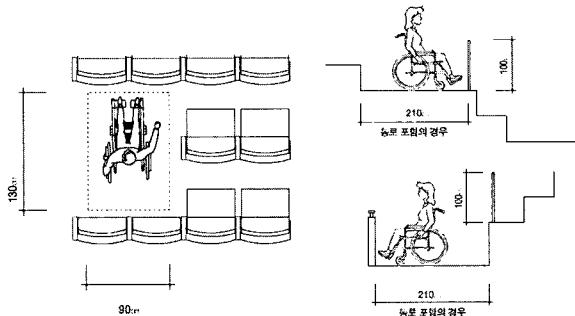
<표 4> 공연시설의 장애인 객석 설치현황 분석표(현행 규격설치기준:○ 설치기준미달:△ 미설치: × , 평면객석형태<표 3 참조>)

공연시설	설치	기준	세부사항(mm)	객석배열위치	객석배치유형	객석형태
국립중앙극장-해오름극장	○	○	1000x1300		한곳에만	확성기형
국립국악원-예의당	○	△	별도 좌석표시 없이 맨 앞줄에 빙자리	2006년 휠체어사용자석 개선예정	한곳에만	상자형
국립국악원-우연당	○	○	규격설치기준		한곳에만	상자형
국립남도국악원	○	○	규격설치기준		한곳에만	말굽형
국립남원민속국악원	△	△	구분표시 없으므로	별도 좌석표시 없이 무대 앞쪽 빙 공간에 앉도록 안내	한곳에만	상자형
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	○	○	토월극장-950x1450		관람석 양쪽	킹크랩형
예술의전당-음악당	○	○	규격설치기준			킹크랩형
아르코예술극장	○	○	규격설치기준		양쪽에 비장애인석 옆	부체형
세종문화회관-대극장	○	△			한곳에 설치	확성기형
충무아트홀	○	△	음향기기 설치			부체형
노원문화예술회관	○	○			한곳에만	상자형
광진문화예술회관	○	○	1250x1300 이상	맨 뒤 출입문 앞	한곳에만	상자형
정동극장	○	△	800x800		한곳에만 있으나 비장애인과 동석 가능	상자형
LG아트센터	○	○	통로폭이 1900임.	맨 뒤 출입문앞	모아서 설치, 비장애인과 동석 불가능	상자형
호암아트홀	○	△	900x1050	1층 출입문 앞	○층 맨뒤	확성기형
수원아외음악당	○	○	900x1500	맨 뒤/중간	맨뒤, 중간	부체형
의정부예술의전당	○	○	900x1600	맨 뒤/중간층에 설치 중	현재는 맨뒷줄만있음, 현재 중간층에 공사중임	확성기형
과천시민회관	○	○	좌석표시 없음	맨 뒤	모아서 설치, 비장애인과 동석 불가능	확성기형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	870x1020		좌우에 각각 6석이 있지만 비장애인과 동행관람은 어려움	부체형
고양문화재단	○	○	860x1300		모아서 설치, 비장애인과 동석 불가능	확성기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	규격설치기준		한곳에만	확성기형
천안시민회관	×	×	×	휠체어사용자석 없음	×	상자형
금산시 디락원	×	×	×	휠체어사용자석 없음	×	상자형
대전문화예술의전당	○	○	940x1300		비장애인과 동석불가능	부체형
대구시문화예술회관	○	○			한곳에만	확성기형
대구오페라하우스	○	○	2640x1250		한곳에 모아둠	말굽형
북구문화예술회관	○	○	3000x2100		한곳에만	상자형
부산문화회관(대극장)	○	△	통로폭 940으로 부족		한곳에 모두 모아됨/ 휠체어사용자가 앉을 경우 통로폭이 좁아져서 다른 관람객의 이동방해하게 됨,	확성기형
광주문화예술회관	○	○		대극장만 설치, 1층 맨 뒷줄	맨 뒷줄에 몰려있음	확성기형
순천문화예술회관	×			휠체어사용자석 없음	×	상자형

## 4. 개선방안

### 4.1. 설치기준의 개선방안

현황조사를 통해 장애인 객석의 설치율이 높은데 반해 세부 실태조사에서는 공연시설의 공연관람에 적합하지 않는 객석 설치가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편의 시설 설치 기준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객석 설치 기준 요건이 공연시설에서는 보다 더 세부적이며 공연객석유형 및 공연관람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연관람을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하여 난간 설치 규정은 보완되어야 한다. 편의증진법의 설치 기준보다 장애인 객석기준에 대하여 상세 조항이 많은 서울시 편의시설 매뉴얼<sup>12)</sup>을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은 설치 기준으로 장애인 동반석을 설치하였을 경우 휠체어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휠체어 뒷좌석의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림 15> 서울시 장애인 객석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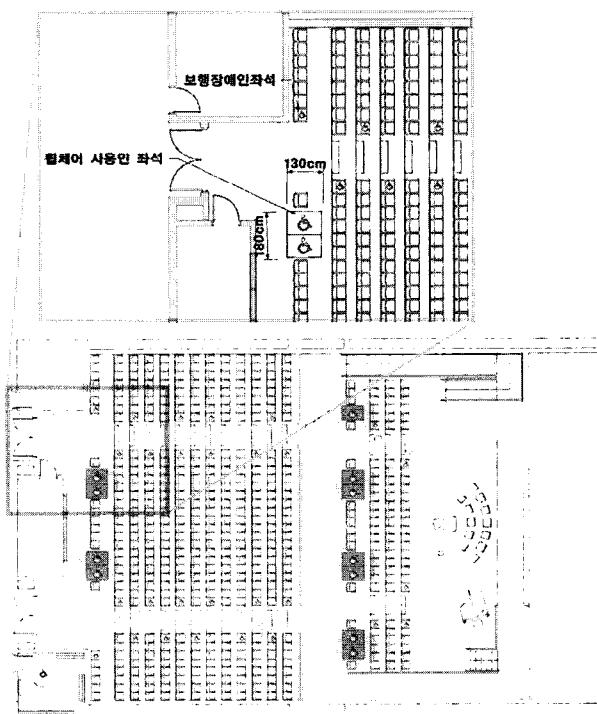
또한, 객석의 중간 열에 장애인 객석을 설치 기준과 같이 설치하였을 경우 뒷 열 객석을 활용하지 못하는 손실이 있으며, 측면 출입에 대한 유효 통로 및 이동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 <그림 15>와 같이 측면 접근을 하는 객석으로 배치 할 경우 이동 또는 피난 시에는 관객 동선에 위험 할 수 있다. 피난에 대비하여 측면 접근 보다는 전면 접근이 용이하도록 앞열 좌석을 제거된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조사대상 공연시설의 평면객석형태는 대부분 확성기형(메가폰형)과 슈박스형으로 조사되었는데, 서울시 설치 매뉴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객석의 배치 형태는 공연 문화시설에서의 객석유형에서 부채꼴 형 또는 메가폰 형일 때 동반석과 같이 앉을 수 있는 배치 형태이다. 조사대상 공연시설에서는 1면 인접형의 슈박스형 객석 배치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림 15>와 같은 객석 설치기준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설치 기준에 대하여 보다 적절한 상세표기가 필요하다. 또한, 입면 및 단면 상세 설치 기준도 같이 제안해 주어야만 한다. 편의시설 설치율이 90%에 가깝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공연시설의 객석 평면형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후 설치된 편의시설들이 기존의 객석평면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 시설 설치 기준에서 제시하는 설치 기준 요건은 체육 및

경기장에서의 관람석 기준으로 적합하며 공연시설에서의 객석 기준을 다르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난간의 설치 규정이 1m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설치 기준 치수는 보완되거나 관람석 기준으로 적용하되 공연시설에서 객석의 설치 기준에서는 수정된 설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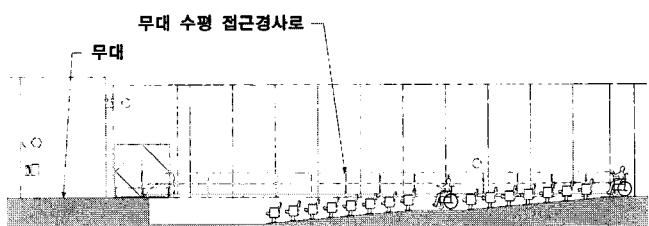
### 4.2. 객석유형에 따른 개선제안

공연 문화시설에서의 객석유형에서 슈박스형 및 메가폰형 객석배열에서의 장애인객석의 배치유형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장애인의 무대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출입구와도 인접하여 피난에 용이하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슈박스형 및 메가폰형 객석배열에서의 장애인객석의 배치유형 제안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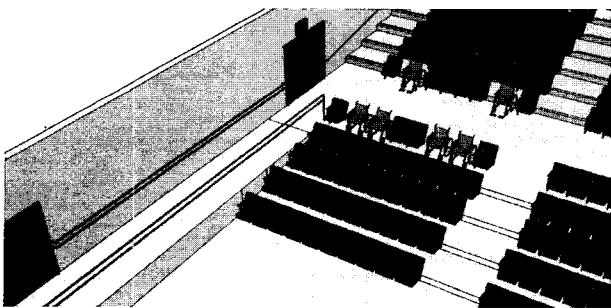
이러한 배치 유형을 고려하여 공연시설의 초기계획 단계에서 객석의 배치 설계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0> 장애인객석의 배치유형 제안 (단면) : 시야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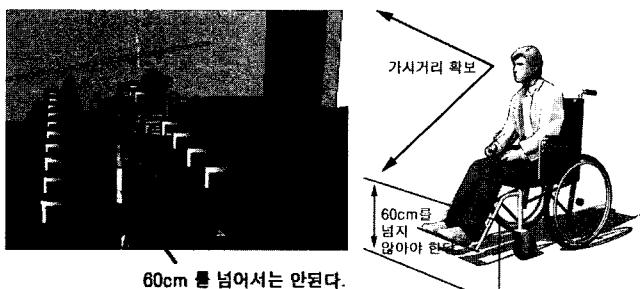
뒷 열 좌석 배치의 경우 출입구의 바로 앞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동반자석과 같이 설치 해주며 동떨어지지 않도록 좌석 열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

12)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1999, p.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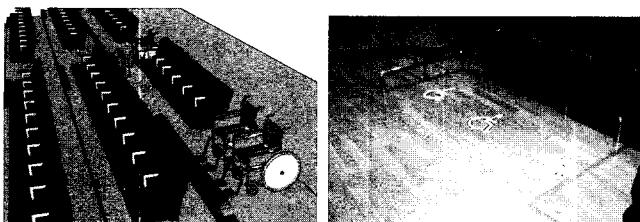
<그림 21> 장애인객석의 배치유형 제안

맨 앞 좌석의 배치보다는 중간 열에 장애인 객석을 배치 해주는 것이 가시거리 및 공연관람을 용이하게 해 주며 다른 관객의 동선에도 방해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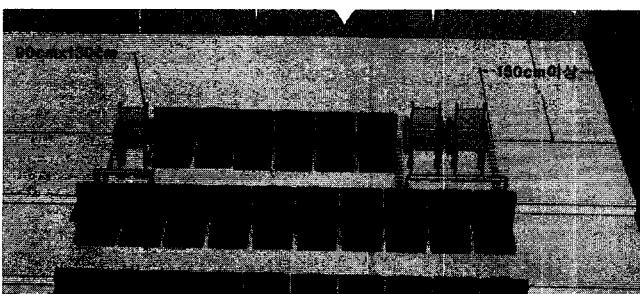


<그림 19> 시야 확보를 위한 설치기준 제안

공연시설에서는 보호 난간을 설치규정을 빼는 것을 권장하나, 설치해야 할 경우 내부시설의 디자인에 맞게 보호 난간의 디자인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보호난간 디자인의 개선 제안



<그림 24> 뒷열 배치의 경우 좌석의 크기 및 배치 개선 제안

## 5. 결론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단면 형태 및 객석, 무대 구성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공연시설의 리모델링에 따른 객석공간의 형식 변화

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앞서 공연시설에서의 장애인 객석 공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실태조사에서는 공연시설내부의 장애인 객석의 설치율이 높게 나타나며 법적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며, 설치위치가 한 곳으로 집중 배치되어 있거나 맨 뒷자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비 장애 동행인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시설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공연시설의 무대 및 객석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관람석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편의증진법 적용 이후 설계 및 시공된 문화시설에서도 장애인 객석의 배치가 맨 뒷자리를 활용하는 집중 및 후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공연시설에서 장애인 객석에 대한 배치가 초기계획단계에서 배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서 객석기준과 관람석의 기준을 함께 적용하기 보단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치위치가 한 곳으로 집중 배치된 장애인객석유형은 외국 관련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객석 분산배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에 공연시설에서 공연 가시거리 및 시야가 확보된 장애인 객석을 분산 배치한다.

둘째, 공연시설의 난간 설치 규정은 삭제되거나 보완될 경우 난간 높이 및 디자인에 대하여 상세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공연시설에서 장애인객석설치는 공연 또는 객석유형에 맞게 초기 계획 설치 기준과 기존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연시설의 장애인 객석 공간 계획시 기본계획방향의 지침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보완 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판단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문헌

1. 이태은 외 1인, 한국 현대공연장건축의 무대와 객석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0.3
2. 건축자료연구회역, 극장·홀(건축설계자료설해집 38), 보원, 서울, 1991
3. 장애우문화센터, 장애우 문화욕구와 문화시설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 우권익문제연구소, 2001
4. 신지호, 공연시설 무대, 객석공간의 평면형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논문, 2005
5. 박동준, 지역문화시설의 장애인 동선 계획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5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05
7. 미국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연합회, 1999
8. The Australian Standard AS1428.2, Part 2 Design for access and mobility, Buildings and facilities, Standards Association of Australia, Australia, 2001
9. 일본 장애인 건축물 관람석·객석 정비기준, 후쿠오카시, 1999
10. The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ity of Toronto Accessibility Design Guidelines, 2004
11.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1999
12. 문화관광부, 문화시설에 대한장애인편의시설설치매뉴얼개발, 2005

<접수 : 2007. 7. 1>